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신설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69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신설 (안 제8조의3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오경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7. 18.

다. 회 부 일 : 2025. 7.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립·공립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공연자, 관람자 및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은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공간적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서 화재나 시설물 붕괴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피해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에 대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연시설 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1.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신설 (안 제8조의3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의 종류 및 가입 대상 시설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8조의3(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제8조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공연자, 관람자 및 종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u>

	<u>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u> <u>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범위</u> <u>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 <u>으로 정한다.</u>
--	---

다. 검토사항

-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은 다수의 관람자, 공연자 및 관계자들이 밀집하는 공간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수 있으며, 실제로 무대장치 낙하, 화재, 낙상 등 공연시설 내 안전사고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¹⁾.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8조는 국립·공립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²⁾, 사고 발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 안전사고 사례집, 2023.12.

2)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2.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 체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이처럼 다수가 이용하는 체육시설 등의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연장 또한 다중이용시설로서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보험 가입) 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여행업자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제17조제1항에 따라 휴업을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휴업을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휴업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⑥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 주체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의 경우 시행령에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공연연습장’은 구체적인 조건 없이 광의(廣義)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 시행 시 법 적용 범위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해당 시설이 공연연습장 외에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개정안 적용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로 인해 이중으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높은 보장 범위·금액의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384

참고

유사 입법례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식품위생법 (제20898호)	• 제44조의2(보험가입)제1항 -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44조의2(보험가입)제2항 -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원법 (제19347호)	•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제3항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20879호)	•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제1항 -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제2항 - 제1항에 따른 인력·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1항 -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2항 -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3항 -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법 (제20499호)	• 제26조(보험 가입)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 시설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